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29,305,228	57,879,157
일반회계	1,702,911,384	51,087,342
특별회계	226,393,844	6,791,815
공기업특별회계	182,278,117	5,468,3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838,871	2,605,16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5,439,246	2,863,177
기타특별회계	44,115,727	1,323,472
주택사업특별회계	82,206	2,4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167,825	335,035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104,396	333,132
교통사업특별회계	18,523,120	555,694
대지보상특별회계	941,807	28,254
수질개선특별회계	1,592,373	47,771

제 2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62,781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